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 실현의 경로

김 세 창
(범민련 조직위원장)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문화, ,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 <6.15공동선언의 내용 중에서>

당면하여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조국통일의 앞길을 새겨 보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실천적 이유가 있다.

첫째는, 6.15공동선언이 향도하는 정세의 주동성과 그 이행의 절박성을 각인함으로써 2003년의 운동을 보다 성과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함이고,

둘째는,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조국통일실현의 이정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6.15시대에 발전된 조국통일의 경로를 더욱 굳게 확신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정견과 소속을 초월하여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당면한 반미자주·반전평화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좌표로서 6.15공동선언 이행운동으로의 운동적 단합과 결집을 더욱 크게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

I. 조국통일실현 경로에 대하여

1. 조국통일실현 경로란 무엇을 말하는가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조국통일의 길에는 우리가 목숨처럼 들고 가야 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이 있다.

조국통일은 본질적으로 보면,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로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7천만 전체 민족이다.

조국을 하루빨리 연방연합방식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을 회복하여 더 이상 외세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는 강력한 통일민족대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다.

조국통일 실현의 경로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서의 통일방안을 말한다. 통일방안은 통일실현의 조건과 방법, 통일정부의 형태와 임무, 나아가 통일 이후 민족의 미래까지를 밝혀 주는 민족번영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조국통일의 경로를 통일실현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한 이해가 아닐 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은 통일하려는 민족주체들의 의지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전민족적인 뜻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며, 그렇게 될 때 민족역량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큰 배라도 등대와 조타수가 없이는 좌초를 면키 어렵다. 때문에 통일방안으로서의 조국통일실현경로를 밝히는 문제는

첫째, 통일운동이 방향과 진로를 밝히는 문제임과 동시에 통일의 걸림들을 없애는 투쟁과제를 밝히기도 한다.

둘째로 통일방안은 통일실현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 외세가 개입된 조건에서 남과 북은 수십년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하에서 살아 왔다. 더욱이 전쟁을 거치고 수많은 대결과 반목을 거듭하여 오는 세월 속에서 민족성과 민족애, 상생과 상호존중보다 자본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를 앞세운다면 결국 민족 모두는 영원한 분열과 대결의 구렁텅이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통일이 아닌 공동번영과 공동이익 속에 자

손만대 자주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존의 원리만이 참다운 통일방안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통일방안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기치로 하는 민족적 이념에 기초해야 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2. 조국통일 실현방도에 있어서 6. 15공동선언의 의의

1)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낳은 쌍생아

10.12 조미공동코뮤니케가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 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자주노선과 민족역량의 주동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민족방침이다.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이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외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자주와 평화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전쟁위기와 평화협상을 오락가락하며 자주냐 예속이냐를 판가리했던 90년대 조미관계를 총체적으로 결산한 2000년 10월의 조미공동코뮤니케에 의해 비로소 구현되었다.

또한 조국통일은 민족성원들의 주체적 역할을 극대화할 때 결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일방안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가며 얼싸안고 잔치하며 서로 돕고 살려는 민족성의 발휘와 단합보다 더 좋은 통일보약은 없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통일 의지와 평화의 염원 그리고 민족단합의 열망으로 가득 찬 반제자주, 민족대단결 노선이 낳은 자주시대의 쌍생아다.

2) 6.15공동선언은 현시기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지름길이다.

조국통일의 지름길이라 함은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이룩할 수 있는 경로와 지향을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조국통일의 이정표라 함은 민족대결과 긴장을 부추기고 분단을 획책하여 왔던 분단주범인 미국의 간섭을 없애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입장에 서서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가야 한다는 원칙과 방법을 밝혀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민족주체적 관점에 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며 민족대단결로 민족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조국통일은 실현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촉진과 실현이라는 역동적이고 상승적인 두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촉진이란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민족구성원간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망라하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끼리 □□라는 민족역량 극대화방침을 통해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조국통일의 실현이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세워 구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에 걸친 통일방안 수립과정을 총화하는 것이다.

3. 6.15공동선언에서 1, 2항의 내용과 의의

1) 1항에 대하여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1항은 반외세항전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는 규정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이루는 최대의 방도를 □□우리 민족끼리 □□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끼리 □□는 조국통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며, □□힘을 합치자 □□는 조국통일의 근본동력으로서 민족주체의 단결의 필요성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측면(조국통일 주체)과 통일과 민족의 장래문제에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한다(반외세)는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7.4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는 외세배격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동시에 조미공동코뮤니케에서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② □□자주 □□의 관점과 세계화

- 남측정부의 자주 : 주변 나라들과도 사이 좋게 지내는 것
- 북의 자주 :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원칙을

말하며, 정치에서 자주는 민족적 독립의 필수적 요구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고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원칙이다. 대외활동에서 기본은 주체이다. 세계화, 지구화는 미국중심의 일체화를 말한다.

2) 2항에 대하여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측의 연합제안이란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를 말하는데, 이는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을 갖고 남북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 남북의원들이 만나는 남북평의회 등을 묶어서 연합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공화국연합제로 표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국가연합이다. 즉, 2국가 1연합기구의 상태를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1연합기구)에서 연방제(1연방정부 2지역정부)로 가는 데는 다당제, 자유선거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전제조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랜 분열로 인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남과 북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며, 사실상 자본주의의 지배주의와 팽창주의를 관철하는 내용이 본질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공존, 공영, 공리를 우선시한 6.15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2단계안을 배제하고 있다.

② 91년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로 완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고 천명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은 □□낮은 단계연방제는 현재의 남과 북 두 정부의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안 □□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은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 개의 제도·두 개의 정부의 대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

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 2항에 대한 접근의 차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는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웃과 부부의 관계와 같다. 국가연합이 두 국가, 두 정부, 두 제도를 전제로 한 후에 이들의 연합을 상정하는 데 반하여 연방제는 비록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더 높은 수준의 남북간의 동질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태도, 주권문제, 주한미군문제 등과 본질적 연관을 갖는 부분이다.)

사상과 이념, 제도,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민족대단결이라는 방도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연합제는 정치영역보다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지역적 상대성을 선호함으로써 통합보다는 교류협력의 기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④ 2항의 귀결: 대체로 6.15 선언의 귀결은 남과 북이 외교, 군사권 등 국가 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⑤ 민족통일기구수립을 전후한 국면에서의 민족주체역량의 역동적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조국통일이란 남과 북을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는 것은 조국통일의 초기 국면으로 진입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을 대표하는 단일한 민족통일기구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의 길을 강력하게 추동할 것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은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민족통일기구의 제한성이나 과도성, 불안정성 등에 주목하기보다는 민족통일기구의 역동성과 전망성에 실천적 무게를 실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은 남북당국대화의 정례화, 전면화를 우선 가져올 것이며, 화해와 단합·교류와 협력을 위한 각 분야의 협상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자주통일의 여건 마련을 위해 각종 정치군사적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히 군축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존재문제가 초미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각종 불평등조약과 협정의 개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관련 수 많은 피해사례(인명, 재산, 환경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및 보상요구운동이 물밀듯 일어날 것이며, 민족통일기구 운영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집결시키고 관철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

러한 운동은 노동자·민중의 민주, 민생, 민권 확보투쟁과 결합되어 이남사회변혁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측 정권과 남측 각계 세력들과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거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선도하고 지휘하는 것은 범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적 요구와 정세적 힘이다.

이 정세 시기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기운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만화방창의 기세로 될 것이다.

3)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실현을 위한 조건

① 2항의 귀결은 6.15공동선언의 정치적 완성을 뜻한다. 이는 민족공동기구의 수립으로 귀결될 것인바 이는 1통일국가건설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한다.

② 민족공동기구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하며(완전한 의미의 1국가성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가지게 하되, 남북교류와 협력 및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를 제도화·구조화시키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상징성과 지향성을 띠는 초보적인 민족권력기구의 구성을 말한다.

③ 6.15공동선언과 같은 민족내부의 합의가 도출되어도 이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국내외적 지형을 개선해야 한다.

때문에 연방연합방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선행시키려는 남측당국의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간섭과 교류협력 방해, 그리고 전쟁 위협을 앞세운 미국의 민족적대 강경책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단합과 공조에 대한 남측의 확고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주적론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논의 보장과 통일운동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의 사회제도와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⑤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대민족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남측의 조직정치적 기초를 튼튼히 육성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남 통일애국운동진영의 정치적 단합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민족화해 대단결노선에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

⑥ 반미(철수, 평화체제 실현과 군축)의 전략적 경로를 확고히 견지해가야 한다.

반미운동을 볼 때 주한미군철수의 청사진을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철수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는 전략적 영역과 군중을 의식계몽화, 조직화하는 전술적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남측에서의 반미운동은 전민특위, 미군범죄근절, 기지반환, 환경오염, 인명·재산

피해보상, 한미행정협정, 토지사용료부과, 주한미군분담금 폐지, 통일운동 방해중지, 전력·관광 등 민족사업에 대한 방해 중지 등등의 다양한 사안과 영역에 걸쳐 진행 된다.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반미운동의 결합은 현 시기 통일운동진영이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상적, 정치적 노선의 기본문제가 되고 있다.

4) 6.15공동선언의 완성은 대체로 정치적 완성, 경제적 완성의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치적 완성이 민족통일기구의 수립과 조미관계개선 및 동북아의 자주적 친선적 관계의 형성으로 집약된다면, 경제적 측면의 완성은 거대한 민족경제건설과 동북아공동체의 구상의 병행실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5)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각종 합의사항과 이행조처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3차 장관급 회담)

② 전력협력문제 (4차 장관급 회담합의 - 미국의 방해로 좌절)

③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남쪽 어민의 북쪽 동해어장 일부 이용 문제, 해운합의서 문제

④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4차 장관급 회담)

⑤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쪽은 강릉 방향으로의 남쪽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하여 육로관광을 추진 (8차 장관급 회담, 11월 26일 비무장지대 동해선 철도·도로 공동측량과 지뢰제거 재개 발표)

⑥ 임진강유역 공동수해방지를 위한 노력

⑦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기업소득세율이 신의주특구보다 낮은 10%로 경제교류협력사업의 본격화 (11월 20일)

⑧ 금강산관광지구법 공포로 관광활성화 (11월 25일)

⑨ 남,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 협력과 가스관의 연결사업의 검토

4. 6.15공동선언이 밝혀 준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1) 6.15 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실현의 경로

조국통일은 남북당국간이 정치협상과 민족대단결운동에 의해 추진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남측의 주체역량이다. 전통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르면 민족자주정권(자주민주정부)의 수립이 전제되어 있으며, 최고민족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밑에 각기 지역정부가 있게 된다.

주한미군철수와 각종 외세매국잔재의 일소, 반통일악법과 기구의 철폐, 민주정치 실현, 각종 불평등국제조약이 폐기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변혁이 연방제 실현의 전제로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민족단합, 민족공조를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조국통일 실현경로의 변화는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전술적 발전이며, 6.15공동선언 이행운동의 전면화는 곧 이남사회변혁을 앞당기는 운동이며,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객관정세의 유불리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대단결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조국통일의 기본경로를 전략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를 심중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족공동기구의 역할

① 민족공동기구의 구성

통일방안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의 귀결은 민족공동기구의 구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민족공동기구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이 □□민족통일기구와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기구 구성은 쌍방이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고 밝힌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민족공동기구는 남북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립되며, 최고합의기구로 정상회의를 두고, 같은 수의 고위당국자와 입법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인도주의문제,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과위원회가 마련되며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다. (남측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를 두고 남북총리가 공동의장을 운번제로 맡고,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인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산하에 정치, 외교, 군사, 문화, 인도 분야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쌍방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남북평의회를 동수로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출된 바 있다.)

유의할 점은, 구성체계보다는 민족자주,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며, 민족기구의 개념의 차이보다는 통일정부구성을 위한 과도적인 민족기구라는 긍정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남북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민족기구는 국가연합기구가 아닌 1국가성을 명확히 지향하게 된다.)

② 민족공동기구의 임무와 활동

우선, 민족공동기구는 민족동질성을 높이는 작업, 통일국가의 국기, 국호, 국가, 국화, 통일헌법의 기초마련, 유엔의석 단일화 등 통일국가의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활동과 조국통일을 더욱 가속화, 전면화해 나가기 위한 제반의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임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민족공동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7천만 민족성원들의 단일주권문제를 해결하는 주권기관의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③ 민족공동기구 수립 시기의 역동성

민족공동기구의 활동에서 통일국가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남북공동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국가수립을 방해하는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활동이 본격화되며 여러 교류와 협력이 비상하게 증진될 것이다. 특히, 연북화해정책의 정착, 국가보안법의 철폐, 애국민주인사의 석방, 통일논의 및 통일단체활동의 자유보장, 긴장완화와 상호신뢰를 위한 군축과 불가침선언, 각종 불평등 조약의 개폐 등 군사적 조치들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한미군철수운동(또는 지위변경)과 아울러 전시작전권 반환운동, 주한미군분담금 폐지운동, 각 지역의 폭격연습장 폐쇄, 한미군사훈련의 전면재조정과 무기반입의 금지, 기지반환투쟁, 주한미군관련 피해사례(인명, 재산, 환경 등)와 6.25양민학살진상에 대한 조사와 사죄배상요구운동이 물밀 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이남사회의 자주화(자주민주정부수립과 민족자주과제의 실현)와 민주화(노동3권, 생활임금 보장, 교육, 모성보호와 육아, 조세, 의료, 주택 등등의 기본권과 부패정치의 청산과 진보정당 활동의 보장 등)의 실현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민족공동기구 운영과정에서 각계각층의사와 요구를 집결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균중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전국민적 총의를 모아내기 위하여 제정당, 사회단체 남측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며, 전민족적인 대민족 회의를 소집하는 투쟁은 민족대단결운동의 최고조의 중흥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운동은 범민족통일국가수립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의 민

주민권·민중생존권확보투쟁과 결합되어 이남사회변혁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측정권과 남측 각계세력들과의 갈등과 경쟁이 상당히 증폭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중간세력에 대한 동요성을 줄이고 애국애족·연북화해의 기치 아래 범민족통일전선으로 굳게 단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월혁명회보 제71호(2004.1)